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선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259

발의연월일: 2024. 8. 27.

발 의 자: 김선교·김성원·김소희

서일준 · 정동만 · 최수진

구자근 · 김상훈 · 이헌승

김예지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해양조사의 실시와 해양정보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박의 교통안전, 해양의 보전·이용·개발 및 해양에 대한관할권의 확보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.

그러나 해양조사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해양조사협회의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한 해양정보 등을 누설하거나 도용할 우려가 있 음에도 이와 관련한 비밀유지 의무에 관한 규정이 없어, 이를 방지하 기 위한 비밀유지 의무 신설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협회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,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, 법 적용의 명확성을 위하여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조항에서 공무상 비밀누설을 규정하고 있는 「형법」 제127조는 삭제하려는 것임(안 제61

조, 제61조의2 및 제63조제5호 신설).

법률 제 호

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61조 중 "「형법」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"를 "「형법」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"로 한다.

제5장에 제6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1조의2(비밀유지 의무) 제60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협회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63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제61조의2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1조(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	제61조(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
제) 제60조제2항에 따라 해양	제)
수산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	
업무에 종사하는 협회의 임직	
원은 <u>「형법」 제127</u> 조 및 제 <u>1</u>	「형법」 제129
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	<u> 조부터 제132조까지</u>
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	
본다.	.
<u><신 설></u>	제61조의2(비밀유지 의무) 제60조
	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
	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협
	회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
	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
	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
	<u>아니 된다.</u>
제63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	제63조(벌칙)
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	
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	
의 벌금에 처한다.	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5. 제61조의2를 위반하여 직무
	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
	<u>나 도용한 자</u>